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10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용

변 론 종 결 2023. 11. 17.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서 2020. 12. 16. 5,700만 원, 2020. 12. 22.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B와 피고는 1982. 4.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관계이다.

나. B는 2017. 5. 19. C에게 남양주시 D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7. 6. 1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주었다.

B는 2020. 1. 31. C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0706),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4.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B는 2020. 12. 15. C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9매와 현금 1,000만 원으로 출금하였고, 2020. 12. 16. 피고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의 F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2020. 12. 22. 피고의 F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B의 C에 대한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2021. 12. 14.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과세처분을 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3. 4. 13. 현재 합계 1,888,425,27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과세채권의 원인행위는 B의 2017. 5. 19.자 매매계약이고, 그에 따라 양수인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6. 17. 경료되었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7. 6. 30.임을 인정할 수 있고(국세기본권 제21조 제3항 제2호), B의 위 양도로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위한 법률관계가 위 시점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증여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의 2020. 12. 16. 내지 2020. 12. 22. 각 당시의 적극재산은 E은행에 예치된 400,095,188원이고, 원고의 B에 대한 과세채권이 1,888,425,270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피고는 B가 2013. 12.경 후두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와 B의 생활비를 피고가 주변인으로부터 빌려 충당하였고,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을 그 동안 생활비로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인지는 채무자인 B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위 주장을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는 항변에 관련된 주장으로 선행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을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던 것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B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B는 생활비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고, 그러다가 2017.경 기초사실에 본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B에게 자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로 받은 합계 2억 7,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